

의안번호	2220981
의 퇴 인	송옥주의원
회 답 일	2026. 9. 23.
추계번호	26B4455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1조의2(도로 유희공간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등) 신설	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및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 유희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.(제1항)	의무규정
		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도로 유희공간을 사용하게 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.(제3항)	재량규정
		도로관리청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도로의 구조, 교통안전 또는 유지·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이전·철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(제6항)	재량규정
		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해당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철거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(제7항)	의무·재량규정
2	안 제61조의3(도로 유희공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우선 추진 등) 신설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(제1항) 1.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주변 유희 비탈면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2. 도로변 녹지대 및 완충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3. 방음벽 및 도로시설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4. 도로시설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 및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발전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(제2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 유희공간의 발굴, 입지조사, 타당성 조사 및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(제3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61조의4(도로 유희공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관리) 신설	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의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1조의2(도로 유희공간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등) 신설	－ 도로 유희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 점용허가(제1항·제3항)	•미대상 － 도로 유희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 점용허가를 할 경우,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수입 증가(재정수입의 증가)가 예상되므로,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음
		－ 천재지변 등 시설 설치·운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철거·이전 시 비용 지원(제6항·제7항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1조의3(도로 유희공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우선 추진 등) 신설	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61조의4(도로 유희공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관리) 신설	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유희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도로의 구조, 교통안전 또는 유지·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이전·철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천재지변 등 시설 설치·운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철거·이전 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도로관리청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(안 제61조의2제6항·제7항)
- 또한,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, 해당 사업을 위한 입지조사·타당성조사 등의 지원,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관리상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(안 제61조3, 안 제61조의4)
- 다만, 현시점에서는 향후 천재지변 등 시설 설치·운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철거·이전하는 시설의 규모 및 철거·이전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며, 도로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의 내용 및 규모,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,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 최근 3년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신규 설비용량을 살펴보면, 2022년 3,689MW, 2023년 4,002MW, 2024년 4,139MW로 나타나고 있음
 - 2024년 기준 원별로는 태양광이 3,956MW로 전체의 95.6%를 차지하고 있으며, 풍력 113MW(2.7%), 바이오 68MW(1.6%), 폐기물 3MW(0.1%) 순으로 나타남

[표 1] 최근 3년간 재생에너지 원별 신규 발전설비용량: 2022~2024년

(단위: MW)

구 분	2022	2023	2024
재생에너지 합계	3,689	4,002	4,139
태양광	3,278	3,682	3,956
풍력	238	219	113
수력	0	5	0
해양	—	—	—
바이오	161	88	68
폐기물	13	8	3

주: 신규 설비용량은 해당 연도의 신설 및 증설 용량이며,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 발생할 수 있음
 자료: 한국에너지공단, 「2024년 신·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확정치(2025년 공표) 결과 요약」, 2025. 12. p.3,
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